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액 상향 및
명단 공표〉

■ 김승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80호)

2025.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액 상향	3
2.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표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승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16.
3. 회 부 일 : 2025. 4. 1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이 해고·징계·전보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때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행강제금 상한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u>3천만원</u>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 ----- ----- ----- <u>1억원</u>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21조의3(명단 공표)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조치는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대상자에게 명단 공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명단 공표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액 상향

☐ 현행법 제20조제1항¹⁾은 공익신고자등이 해고, 징계, 전보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21조의²⁾는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무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의무이행확보 수단으로, 2016년 본 법에 도입되면서 상한액을 2천만원으로 규정하였으나 보호조치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2018년 3천만원으로 상향 개정된 바 있음.

□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도 여전히 보호조치결정을 미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규정된 이행강제금의 수준이 실효적인 이행 확보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 최근 5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7건 중 2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음에도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복 부과한 것임.

2)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

<최근 5년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년도	보호조치결정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	미이행	건수	사유(금액3)
2020	21	1	2	· 해고처분 취소 미이행(3,000만원) · 중식비 부담 요구 취소 미이행(2,000만원)
2021	9	3	0	
2022	10	2	4	· <u>해고처분 취소 미이행(3,000만원)</u> · 보직해제 취소 등 미이행(2,000만원) · <u>정직처분 취소 미이행(2,000만원)</u> · <u>정직처분 취소 미이행(2,000만원)</u>
2023	1	0	1	· <u>해고처분 취소 미이행(3,000만원)</u>
2024	1	0	0	
계	42	6	7 ⁴⁾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현행 3천만원 이내에서 1억원 이내의 범위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불이익조치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핵심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도의 이행력을 높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있는 바, 상한액 금액의 적정성 여부의 판단을 위해서는

-
- 3)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결정함.
예를 들어 ‘과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의 경우 1,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
- 4)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건수와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차이나는 이유는 2020년 부과 2건 중 1건이 2019년 미이행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임.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비슷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등 구제 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상한액(3천만원) 등과 비교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이행강제금(현행 3천만원 이하) 규정⁵⁾을 함께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안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타 법률 이행강제금 사례>

법률	대상행위	이행강제금		
		상한액수	회수	기간
영유아보육법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1억원	연2회	이행시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살균제 관련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 미이행	1억원 ⁶⁾ (1일당 15만원)	연1회	이행시까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	3천만원	연2회	이행시까지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이행강제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법 률	대상행위	이행강제금		
		상한액수	회수	기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3천만원	연2회	이행시까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보호조치결정 미이행	3천만원	연2회	이행시까지
근로기준법	부당해고등 구제명령 미이행	3천만원	연2회	2년 이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편의시설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	3천만원	연1회	이행시까지
도로법	도로점용 후 원상회복 미이행	1천만원	연2회	이행시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광고물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	5백만원	연2회	이행시까지

2.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명단 공표

□ 개정안은 보호조치결정 이행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이행강제금 상향 이외에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의 이름, 위반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 6)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일 수를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이행기간이 365일 미만인 경우에는 1일당 15만원, 미이행기간이 365일 이상인 경우 경우 일당 25만원으로 하고 있으나, 그 상한은 1억원으로 두고 있음.
- 7) 이행강제금은 정액 기준으로 산정되거나 목적물의 가액(주식의 경우 장부가액, 건축물 등의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보호조치결정의 경우 별도의 목적물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정액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산정된 경우만을 고려하였음.

<명단 공표 입법례>

법 률	명단 공표 내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명단 공표)	고액부정 청구등행위자 명단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장애인고용의무불이행자 명단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자 명단

□ 범위반사실의 공표는 의무위반자의 명예와 신용을 추락시키고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⁸⁾.

□ 강력한 의무이행확보 수단인 명단공표 제도를 도입하여 보호조치결정의 이행력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공표 여부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소명기회 부여 등을 규정하고 있고,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표의 남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음.

8) 하명호, 행정법(제7판), 박영사, p.467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청이 따라야 할 절차를 규정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을 따르도록 규정⁹⁾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될 것임.

□ 아울러, 이행강제금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의 유사 법에 해당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 미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상한액 상향 및 명단 공표 규정 신설 개정안에 대하여 보호조치결정의 조속한 이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7

9)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